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5422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5422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8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 선고 2016. 12.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8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평군 L전 581m² 1)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6, 15, 9,

8, 14, 7, 1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별지 지적도 등본(을 제5호증)'을 '별지 지적도 등본(갑 제13호증)'으로 고치고, 6면 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의 토지는 맹지이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i) K 소유인 G, H, I 및 J 토지 일부를 통하거나(이하 'K 소유 토지'라 한다), ii)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통하는 길 중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길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토지와 맞닿아 있는 K 소유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콘크리트 포장에 되어있고, 여러 주택에 접하고 있어 앞으로도 도로로 이용될 필요가 있는 반면, 피고 소유 토지는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고의 통행이 아니면 굳이 도로로 이용될 필요가 없는 토지인 점에서 K 소유 토지가 통로로 제공되는 것이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K 토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마당이 있고, 낙차가 존재하여 K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영상에 의하면 K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가 맞닿은 부분에 낙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마당이 존재한다는 점이 통행로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피고가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현재 원고 소유인 토지들에 거주하던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도록 한 점과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점(갑 제17호증의 1, 2)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N 사이에 통행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정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통행권의 경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한

판사조실

판사김새미

별지

1) 경기 양평군 C, M는 2016. 7. 25. L로 합병되었다.